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결과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34조 및 제136조 등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성민	1982.04.04	전라남도 여수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해임권고 처분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성민	(주)□□□□□□□□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성민은 2018.2.13. 지인 형○회와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 중이던 형○회의 차량으로 단독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형○회로 하여금 □□□□□□□□(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34조, 제136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해임권고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29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